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75
------	-----

2019.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강태웅)

1. 제안이유

가.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함.
 - 지역발전본부(~'20.6.30.) :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총괄
 - 문화시설추진단(~'20.8.18.)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전담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하여 문화·균형발전 분야의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 까지 실시·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 최초 3년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3년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참고자료 1】.
- 현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

단, 남북협력추진단 등 모두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지역발전본부	2016.07.01~2019.06.30	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
문화시설추진단	2016.08.19~2019.08.18	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남북협력추진단	2018.11.01~2019.10.31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민간·정부·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이 중 올해 6월과 8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에 대해 1년 단위의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 and 문화시설 건립 확대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이들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음.¹⁾
-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2016년 기구 신설 이후 1년 단위로 3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했으며, 이번 1회 연장(3년 단위)으로 최대 2022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2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3년 연장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한시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2016.3월)에 따라 '1년 단위'(필요시 3년 까지)로 협의를 하고 있음. [참고자료2]

다. 한시기구의 연장 필요성 검토

○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개 권역(동남, 동북, 서남, 서북권)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문화시설추진단’은 40여개의 박물관·미술관·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각 시설간의 연계·통합하는 총괄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어, 일관성·체계성·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구 존치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2025년까지 총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21.4)
- ▷ 서울아레나 건립 및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본격 추진(~ ‘25년)
- ▷ 마곡 융복합 R&D 단지 조성 등 서남권 혁신 거점기반 완성(~ ‘30년)
- ▷ 서북권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19년~)

- ‘문화시설추진단’은 2023년까지 11개 박물관·미술관 신설, 2025년까지 29개 문화시설 건립(자치구 문화시설 확충 10개소 포함) 등 박물관·미술관 개관에 따른 체계적인 전시·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자치구 문화시설 건립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이들 사업의 연속성·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 특히,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사업완료 시점이 각각 2030년, 2025년 이상 지속될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규기구로의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들 한시기구 3개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정규기구처럼 설치·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임시 법외기구²⁾에 대해서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시장방침으로 설치된 임시 법외기구 : 국제협력관(2013.12.02), 복지기획관(2014.07.04), 보행친화기
획관(2010. 08.16), 대기기획관(2011.11.29), 재생정책기획관(2012.09.28), 주거사업기획관
(2011.11.2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6월 30일” 및 “2019년 8월 18일”을 각각 “2020년 6월 30일” 및 “2020년 8월 18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6859호, 2018. 5. 3.></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u>2019년 6월 30일까지</u>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19년 8월 18일까지</u>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6859호, 2018. 5. 3.></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u>2020년 6월 30일</u> ----- ----- ----- <u>2020년 8월 18일</u>-----.</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5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

- 지역발전본부(~'20.6.30.) :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총괄
- 문화시설추진단(~'20.8.18.)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전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3. 14. ~ 3. 18.)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6월 30일” 및 “2019년 8월 18일”을 각각 “2020년 6월 30일” 및 “2020년 8월 18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6859호, 2018. 5. 3.></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제1항의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u>2019년 6월 30일까지</u>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19년 8월 18일까지</u>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6859호, 2018. 5. 3.></p> <p>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u>2020년 6월 30일</u>----- ----- ----- <u>2020년 8월 18일</u>-----.</p>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관 신설 및 실·본부·국 소관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4)